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연월일	2020. . . (제 회)	

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김현미 (국토교통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0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물관리 일원화 조치에 따른 「정부조직법」 개정(법률 제15624호, 2018. 6. 8. 공포·시행)으로 수자원의 보전·이용 및 개발 사무가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변경되었고, 이에 따라 「댐 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등의 소관이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변경되는 등 댐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제도, 건설·관리 사무가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됨.

이에 따라 「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」(이하 「댐주변친환경보전법」이라 한다)의 소관을 환경부로 변경하는 법률개정안이 통과(법률 제 호, 2020. . . 공포·시행)됨에 따라 하위법령인 「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의 소관부처를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변경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계획 수립대상 지역의 판단, 주민의견 수렴,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구역 지정 등의 고시,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, 실시계획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, 준공검사, 행정처분의 고시, 권

한 의 위임 등의 주체를 국토교통부장관에서 환경부장관으로 변경함.

대통령령 제 호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정부조직법」(법률 제15624호, 2018. 6. 8. 공포·시행)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

라. 기 타 :

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

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 및 제7호, 제4조제1항·제4항·제5항, 제5조제2항, 제6조제1항부터 제3항, 제9조, 제10조제2항,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, 제16조, 제17조, 별표 1의 본문 중 “국토교통부장관”을 각각 “환경부장관”으로 한다.

제3조제1항제5호 중 “환경부장관과 협의되지 않은 지역”을 “환경부장관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지역”로 한다.

제3조제4항 중 “국토교통부장관”은 “환경부장관”으로 하고 “환경부장관에게 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.”는 “ 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다.”로 한다.

제12조제1항·제2항 중 “국토교통부령”을 각각 “환경부령”으로 한다.

제17조 중 “지방국토관리청장”을 “지방환경관서의 장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3조(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 수립 대상지역 및 면적 기준 등)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 수립 시 대상지역은 댐 주변지역 중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.	제3조(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 수립 대상지역 및 면적 기준 등) ① (현행과 같음)
1. 다른 법령에 어긋나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·고시된 지역·지구 등에 포함되어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<u>국토교통부장관</u> 이 인정하는 지역	1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환경부장관</u> ----- -----
2.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이나 사업 완료 후에 댐의 유지·관리에 제약을 줄 수 있다고 <u>국토교통부장관</u> 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 또는 시장·군수·자	2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환경부장관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
치구의 구청장(이하 "시장·군수·구청장"이라 한다)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지역	----- ----- -----
3.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을 시행하면 과도한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어 자연환경이 심하게 훼손되고 주변경관이 보전되기 어렵다고 <u>국토교통부장관</u> 이 인정하는 지역	3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환경부장관</u> ----- -----
4.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을 시행하면 상수원 수질에 영향을 주어 사업 전과 같은 수준의 수질이 유지되기 어렵다고 <u>국토교통부장관</u> 이 인정하는 지역	4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환경부장관</u> ----- -----
5. 「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, 「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, 「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 및 「영산강·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수변구역	5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
중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의 대상지역에 포함 되는 지역으로 <u>환경부장관과 협의되지 않은 지역</u>	----- ----- ----- <u>환경부장관이</u> <u>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</u> <u>지역</u>
6. (생 략)	6. (현행과 같음)
7. 그 밖에 계획적이고 친환경적인 개발과 이용이 어렵다고 <u>국토교통부장관이</u> 인정하는 지역	7. ----- ----- ---- <u>환경부장관이</u> 인정하는 <u>지역</u>
② ~ ③ (생 략)	② ~ ③ (현행과 같음)
④ <u>국토교통부장관</u> 은 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<u>환경부장관에게 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.</u>	④ <u>환경부장관</u> ----- ----- ----- -----「 <u>환경영향평가법</u> 」 <u>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</u> <u>를 실시한다.</u>
제4조(주민의견 수렴) ① <u>국토교통부장관</u> 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들어려는 경우에는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송부해	제4조(주민의견 수렴) ① <u>환경부</u> <u>장관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
야 한다.	-----.
② ~ ③ (생 략)	② ~ ③ (현행과 같음)
④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고, 제출된 의견과 그 검토의견을 <u>국토교통부장관</u> 에게 제출해야 하며, 제출된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<u>국토교통부장관</u> 에게 통보해야 한다.	④ ----- ----- ----- ----- <u>환경부장관</u> ----- ----- ----- <u>환경부장관</u> ----- -----.
⑤ <u>국토교통부장관</u> 은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검토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제출된 검토의견을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하여 해당 의견 제출자 및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.	⑤ <u>환경부장관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제5조(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) ① (생 략)	제5조(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했을 때에는 그 변경 내용을 지체 없이 <u>국토교통부장관</u> 에게 통보해야 한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환경부장관</u> ----- -----.

제6조(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구역 지정 등의 고시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구역을 지정했을 때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(변경지정의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을 말한다)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.

1. ~ 6. (생략)

7.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시의 내용 중 제5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업시행자, 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 및 그 밖에 해당 권리를 가진 자에게 알려야 한다.

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구역의 지정을 해제했을 때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.

제6조(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구역 지정 등의 고시) ① 환경부장관-----

1. ~ 6. (현행과 같음)

7. -----환경부장관-----

② 환경부장관-----

③ 환경부장관-----

1. ~ 4. (생략)

제9조(실시계획 승인의 고시)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 실시계획(이하 "실시계획"이라 한다)의 승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.

1. ~ 6. (생략)

7.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10조(실시계획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) ① (생략)

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실시계획의 변경을 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.

제12조(준공검사)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준공검사 신청서에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제9조(실시계획 승인의 고시) 환경부장관-----

1. ~ 6. (현행과 같음)

7. -----환경부장관-----

제10조(실시계획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환경부장관-----

제12조(준공검사) ① -----

----- 환경부령 -----

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<u>국토교통부장관</u> 에게 제출해야 한다.	----- <u>환경부장관</u> 에게 제출해야 한다.
1. ~ 7. (생 략)	1. ~ 7. (현행과 같음)
② <u>국토교통부장관</u> 은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준공검사를 실시한 후 <u>국토교통부령</u> 으로 정하는 준공 검사 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.	② <u>환경부장관</u> 은----- ----- ----- <u>환경부령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다만,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 용 사업이 실시계획의 승인된 내용대로 완료되지 않았을 때에 는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사업시행자에게 지체 없 이 통보해야 한다.	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③ <u>국토교통부장관</u> 은 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효율 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기 관, 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전문 기관이나 단체에 댐 및 주변지 역 친환경 활용 사업이 실시계 획의 승인된 내용대로 시행되었 는지에 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.	③ <u>환경부장관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
제16조(행정처분 고시) <u>국토교통 부장관</u> 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 라 명령 또는 처분에 관하여 고 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포함해야 한다.	제16조(행정처분 고시) <u>환경부장 관</u>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5. (생 략)	1. ~ 5. (현행과 같음)
제17조(권한의 위임) <u>국토교통부 장관</u> 은 법 제2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<u>지방국토관리청 장</u> 에게 위임한다.	제17조(권한의 위임) <u>환경부장관</u> 은 법 제2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<u>지방환경관서의 장</u> 에게 위임한다.
1. ~ 12. (생 략)	1. ~ 12. (현행과 같음)

유지관리재원 조성의 기준 및 산출방법(제14조제2항 관련)

1. 조성의 기준

유지관리재원은 총수입에서 총사업비를 뺀 금액으로 조성한다.

2. 산출방법

가. "총수입"은 다음의 매각수입(분양수입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, 임대수입 및 직영수입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.

- 1) 매각수입: 조성 토지 및 시설의 매각에 따른 실수입액
- 2) 임대수입: 조성 토지 및 시설의 임대에 따른 실수입액
- 3) 직영수입: 사업시행자의 직영사업에 따른 실수입액

나. "총사업비"는 다음의 투자사업비, 임대사업원가, 직영사업원가 및 자본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.

- 1) "투자사업비"는 다음의 용지 매수 및 보상비, 조사비, 설계비, 공사비, 일반관리비 및 그 밖의 경비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.

가) 용지 매수 및 보상비: 토지 및 시설 매입비, 지장물(支障物) 보상비, 권리보상비 및 이주대책비 등의 합계액

나) 조사비: 측량비 및 그 밖의 조사비용의 합계액

다) 설계비: 설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의 합계액

라) 공사비: 재료비, 노무비, 경비, 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합계액

마) 일반관리비: 공사감리비 및 사업관리비 등 관리활동 부문에서 발생한 각종 비용의 합계액

바) 그 밖의 경비: 환경영향평가비, 잡지출(그 밖에 사업 관련 각종 지출), 세금, 공과금, 부담금,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액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의 합계액

- 2) "임대사업원가"는 임대기간 중 임대수입을 창출하는 데 사용되는 재료비, 인건비, 경비 및 일반관리비 등의 합계액으로 한다.

- 3) "직영사업원가"는 직영기간 중 직영수입을 창출하는 데 사용되는 재료비, 인건비, 경비 및 일반관리비 등의 합계액으로 한다.

- 4) "자본비용"은 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조달하는 데 사용되는 비용으로 한다.

3.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지관리재원의 조성 기준, 산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하천계획과	
연 락 처	(044) 201-3642